#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34

발의연월일: 2021. 3. 4.

발 의 자:문진석・서영석・송갑석

이형석 · 최강욱 · 이규민

윤재갑 • 조오섭 • 이정문

이상헌 • 박홍근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 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 로 보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고려할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 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 나.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 큰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제61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60조(몰수·추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및 제5항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생 략) 방지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 | ② ------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 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 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 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 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 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

<신 설>

제57조(벌칙) <신 설>

<신 설>

<u>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u> 있다.

⑤제4항에따른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에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u>징역</u>
	<u>2. 이익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u>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u>유기징역</u>
<u>①</u> (생 략)	<u>③</u> (종전의 제1항과 같음)
<u>②</u> (생 략)	<u>④</u> (종전의 제2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59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7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
	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u>&lt;신 설&gt;</u>	제60조(몰수·추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
	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
	<u>액을 추징한다.</u>
<u>제59조</u> (양벌규정) (생 략)	<u>제61조(</u> 양벌규정) (종전의 제59조
	와 같음)
<u>제60조</u> (과태료) (생 략)	<u>제62조</u> (과태료) (종전의 제60조와
	같음)